

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8년 1차 연구기획분과 회의자료(1월)



○ 일 시 : 2018. 1. 16.(화) 10:30 ~12:00

○ 장 소 :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중회의실

○ 주요내용

1. 인사 및 공유

- 1) 위원 인사 및 기관별 행사·정책 변동사항
- 2) 지방분권개헌 내용

2. 안건토의

- 1)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
- 2) 2018년도 실무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계획

3. 차기회의 일정

1. 인사 및 공유

1) 위원 인사 및 기관별 행사. 정책 변동사항 공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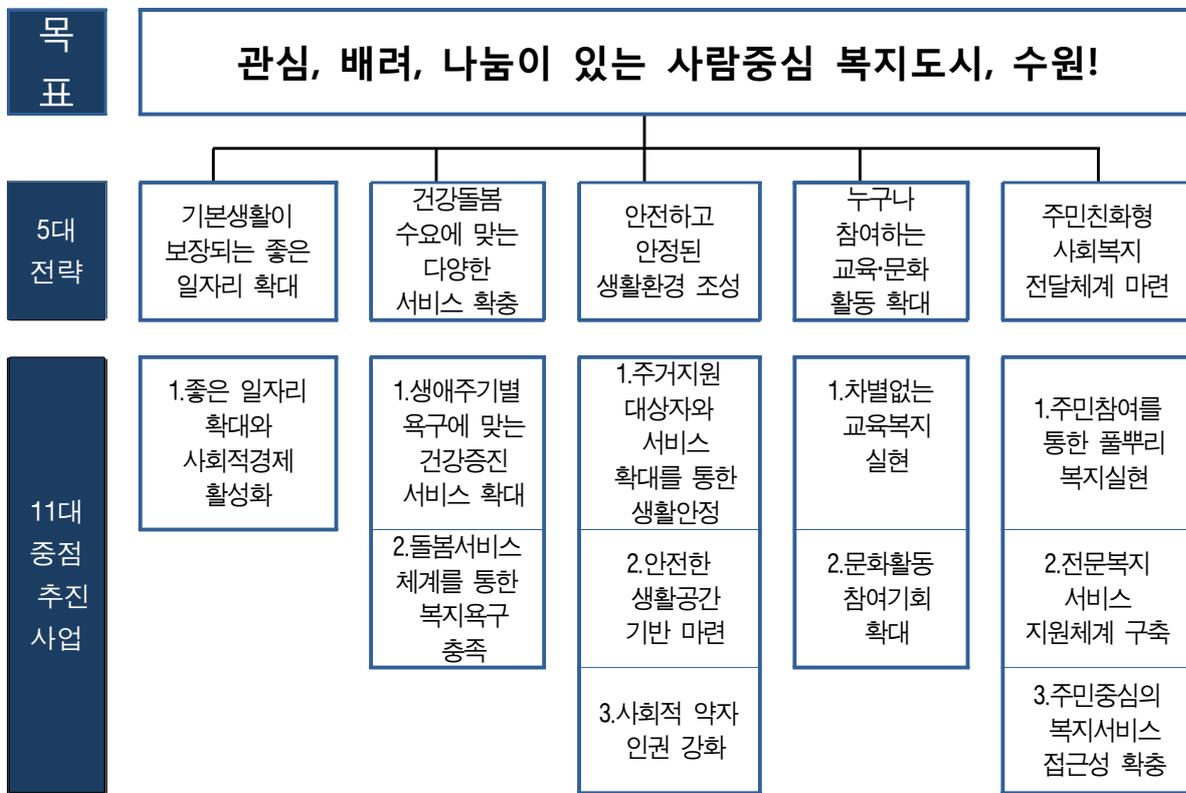
2) 지방분권개헌 내용

※ 별첨자료 참고

2. 안건토의

1) 2017년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

○ 제3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비전 체계



○ 관련 근거

- 사회복지급여법 제39조(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)
- 사회복지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(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)

○ 평가 개요

- 평가대상 : 제3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

- 추진과제

〈단위 : 개/천원〉

| 구 분 | 총 계 | 지 역 사 업 | 보 편 사 업 | 비고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건수 | 74 | 55 | 20 | · 지역사업 : 도·시비사업 · 보편사업 : 국비사업 |
| 사업예산 | 76,411,045 | 42,780,627 | 33,630,418 | |

- 평가주체 : 수원시·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
- 평가기간 : 2018. 1 ~ 2월
- 평가절차

| 내 용 | 역 할 | 일 정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평가 기획 | 복지허브화추진단 협의체 사무국 | 2018. 1. 2.(화) ~ 3.(수) |
| 사업 추진결과 작성, 취합 | 사업 소관부서 | 2018. 1. 4.(목) ~ 11.(목) |
| 세부사업 평가 모니터링 | 협의체 12개 실무분과 | 2018. 1. 16.(월) ~ 25.(수) |
| 평가 내용 정리, 발송 | 협의체 사무국 | 2018. 1. 29(월) |
| 사업부서 의견 피드백 | 사업 소관부서 | 2018. 1. 30.(화) ~ 2. 5.(월) |
| 평가 TFT 확인, 평가 | 평가 TFT | 2018. 2. 6.(화) ~ 9.(금) |
| 실무협의체 검토 | 실무협의체 | 2018. 2월 넷째주 예정 |
| 대표협의체 심의, 도 제출 | 대표협의체 복지허브화추진단 | 2018. 2월 말 예정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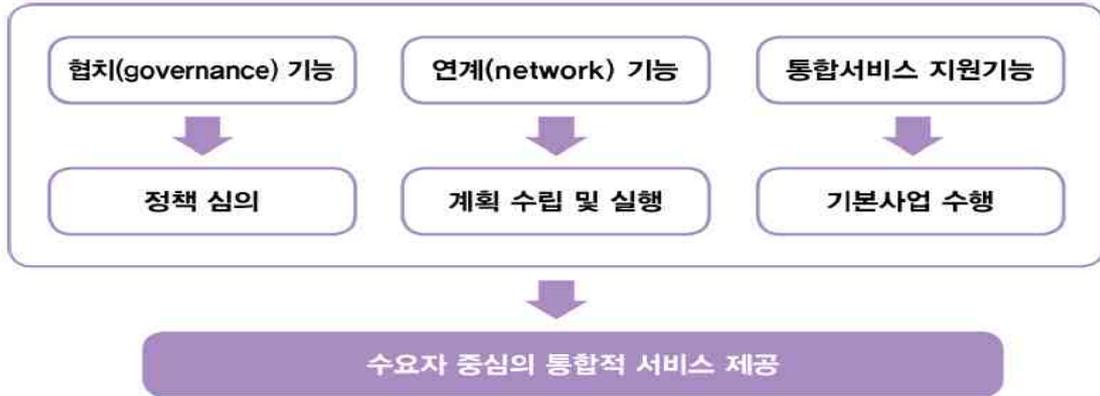
○ 세부사업(모니터링사업)

| 사업 번호 | 구분 | 사업명 | 세부사업명 | 담당부서 | 담당팀 | 담당자 |
|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
| 6-1 | 지역 | 수원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 | 인권상담센터 운영 | 감사관 | 인권팀 | 정수진 |
| 6-2 | 지역 | 인권강화 교육 | 인권교육 강화 | 감사관 | 인권팀 | 차선화 |
| 8-7 | 보편 |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 |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 | 문화예술과 | 문화정책팀 | 박은미 |
| 9-4 | 지역 | 수원시종합자원봉사 센터운영 | 시민 자원봉사 참여제고 | 자치행정과 | 주민지원팀 | 이선명 |
| 9-4 | | 수원시종합자원봉사 센터운영 |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| 자치행정과 | 주민지원팀 | 이선명 |
| 10-6 | 지역 |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| 보수교육, 상해보험비 지원 | 복지허브화 추진단 | 복지자원 관리팀 | 박선하 |

※ 세부실적 별첨

2) 2018년도 실무분과 활동 및 민관협력 공동사업 논의

<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기능>



[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]

| 주요 기능 | 내 용 |
|-------------------|--|
| 협치(governance) 기능 | •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·과정·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심의·자문 |
| 연계(network) 기능 | •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과 연계·협력 강화 |
| 통합서비스 기능 | •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•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·주거·교육·문화·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|

<연구기획분과 역할>

| | |
|-------------|---|
| 공통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◦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·협력에 관한 사항 ◦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 받은 사항 ◦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◦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, 변경, 시행, 평가에 관한 사항 ◦ 사회보장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자원연계·협력 강화 - 분야별 사회보장 정보 공유 - 분야별 사회보장 욕구 파악 및 서비스 연계 지원 ◦ 분야별 지역 현안사항 공동사업 추진 및 운영 |
| 연구기획분과 주요역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수원시 사회보장 정책 이슈 개발, 조사·연구 ◦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활성화 지원 ◦ 주민참여 및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지원 ◦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지원 |

<참고자료>

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

제5조(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)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공동분과장 2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(이하 “실무분과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.

1.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
2.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·협력에 관한 사항
3.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 받은 사항
4.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사회보장, 보건의료, 고용, 주거, 교육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각각 1명의 공동분과장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체 회의에 참여하며, 총무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

제7조(실무분과)

① 실무분과 구성분야는 생애주기별 분야, 사회보장 전략별, 동인적안전망(동보장협의체 등), 기타 사회보장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간 연계·협력 강화가 필요한 분야로 구성한다.

② 실무분과의 신설 폐지는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체 검토를 통해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한다.

③ 실무분과 위원은 조례 제5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조례 제5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
2. 사회보장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등 종사자
3. 학계 및 사회보장 관련 연구기관 등 전문가
4. 기타 공익 및 시민단체 관련 종사자
5. 지역사회보장 발전에 관심 있는 수원시민 등

④ 위원의 구성방법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실무협의체에서 구성하며, 위원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임기 내 위촉 시에는 실무분과 회의에서 분과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.

⑤ 조례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외에 분과회의를 3회 연속 불참하거나 실무분과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시 제4항의 절차에 의하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⑥ 실무분과의 원활한 운영과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을 간사로 선임한다.

<2018년 민관협력 공동사업 추진 개요>

○ 목적

- 민관협력 및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경험을 쌓고 지역사회 보장증진과 실무분과의 활성화를 도모함.

○ 2018년도 추진방향

-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제안을 위한 근거 및 토대 마련

○ 사업내용

- 제4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논의를 확산하기 위한 토론회 및 정책간담회,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
- 지역의 현안 욕구 및 문제를 발굴·연구하여 정책 과제로 제안하는 사업
- 단일 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적 욕구 및 업무 추진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합 사업

○ 추진절차



- 실무분과별 운영 방향 및 사업 논의 : 2018. 1월 중
- 실무분과 민·관협력 공동사업 계획 취합 : 2018. 2월 7.(수)
- 공동사업 검토, 확정(실무협의체 회의) : 2017. 2. 19.(월)
- 사업 추진 : 2018. 3월 ~ 9월 ※ 집중추진 요청기간 : 3월 ~ 6월 중
- 결과보고서 제출 : 2017. 10월 말까지

○ 추진방법

- 실무분과장의 책임하에 분과별 책임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

<2018년 실무분과 활동 계획>

- 정기회의 일자 : ____ 짜주 ____ 요일, _____ 시
- 실무분과 활동 논의(주제, 내용, 방법 등)

| |
|--|
| |
|--|

○ 월별 활동

| 월 | 공동사업 | 지역사회보장계획 | 협의체 전체 행사 | 일정, 장소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1 | *계획 확정, 제출 | 2017년도 시행계획 평가 | | |
| 2 | *분과 사업 확정 | | | |
| 3 | | | 전체 워크숍 | |
| 4 | |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 논의 | | |
| 5 | |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 논의 | | |
| 6 | |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 논의 | | |
| 7 | | 원탁토론 2018년도 시행계획 중간평가 | | |
| 8 | | 검토, 보완 | | |
| 9 | | 공고, 공청회, 심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제출 | | |
| 10 | *분과사업 종료, 결과보고서 제출 | 2019년도 시행계획 수립 검토 | | |
| 11 | | 2019년도 시행계획 수립 심의 | | |
| 12 | | | 성과보고대회 | |

※ 협의체 전체 행사 : 지방선거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(실무분과명)

사업명 _ 000

1. 추진배경 및 필요성

-
-

2. 사업목적

-
-

3. 사업목표

-
-

4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
- 대 상 :
- 주요내용 (개요)

5. 세부계획 (단위사업별 세부 계획)

1) 세부사업 1 :

- 시행시기 :
- 참여인원 :
- 세부내용(활동) :
 -
 -

- 추진방법 :
- 참여기관 및 역할분담

2) 세부사업 2

